

## 예금자보호법 관련 설명

본 금융회사는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이며, 고객이 예치한 예금은 동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.

### 보호 대상 금융상품

본 금융회사의 원화예금, 외화예금, 적금, 예금성 지급보증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,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### 보호 한도

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 금융회사 기준으로 원리금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.

예금보험 한도(5천만원)는 예금자 본인 명의로 보유한 모든 예금상품의 원금 +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# 비보호 금융상품

다음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
### 파생상품, 펀드 등 투자상품

### 보험계약 중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

### 법령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금융상품

## 예금보험금 지급 사유

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.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.

## 유의사항

예금보험 적용 대상 및 보호 한도는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([www.kdic.or.kr](http://www.kdic.or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